

제414회 임시회

'24. 1. 24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6일

3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○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○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○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임신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단독조례로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완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는 적절한 조례 제정 취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2조는 “다자녀가정”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에서 명시되어 있는 “다자녀가정”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, 양육 및 보육 지원,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- 안 제8조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11조는 홍보에 관한 것으로,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바,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2조는 모범 다자녀가정,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경우,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 2자녀로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이에 발맞춰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고,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